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2. 11 - - - - 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2. 12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7.12.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양종호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부서명칭을 일부 조정하고,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규정을 삭제하면서 본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부서명칭 일부변경(안 제5조, 제7조)
 - 문화공보과 → 문화관광과
-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규정 삭제(안 제3조의2)
 - 도시개발추진단(여유기구) → 도시개발과(상시기구)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명 정비(안 제1조 · 제8조 · 제11조)
 - 지방자치법 제102조→제112조, 제104조→제113조, 제105조→제114조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(제112조)

※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(2007. 11. 12. 연제구 질의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 개정안은

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,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무의미하게 된 여유기구 설치규정을 삭제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관광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구 지역 이미지에 걸맞게 「문화공보과」 명칭을 「문화관광과」로 변경하고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금까지 여유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도시개발추진단은 2007. 1. 1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여유기구 설치가 무의미하게 되어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